

# 「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규정에 따라 「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


## 1. 공고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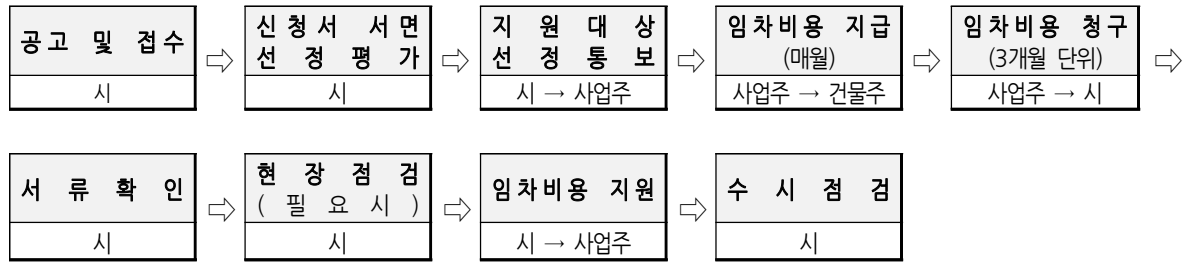
- 공고명 : 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
- 공고기간 : 2024. 2. 22.(목) ~ 3. 8.(금)
- 목적 : 관내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 유도 및 근무 편의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증대 목적
- 사업기간 : 2024. 3월 ~ 12월
- 사업예산 : 60,000천원

## 2. 지원내용 및 자격

- 지원대상 : 시흥시 관내 **중소 제조기업**(관내 소재 기숙사 제공기업)
- 지원규모 : **20명** ※예산범위 내 수시 추가모집 진행 가능
- 지원자격 및 조건
  -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**80%이내** 지원
    -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
      - ※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던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
      - ※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월세 임대차 계약에 한함
  - 기업별 **5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 이내** 지원
    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    -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
    -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  -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**정규직**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

-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제외
- 지원범위 내 기업당 **최대 1명까지 외국인 지원 가능**
  - 단 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노동자 제외
- 근무지와 기숙사가 **모두 관내에 소재**
  -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, 근무지와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 
(단,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)

## □ 지원절차



## □ 지원방식

-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제출 관련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
  - 임대차 계약 서류,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
-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
  - 청구 시 월 임차료 이체내역 등 선지급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(4대보험 가입증명서, 재직증명서, 출근부, 기숙사 이용확인서 등) 제출
  -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(필요 시 현장 확인)
-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
  -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우리 시에 통보해야 하며 이때, 공실 발생 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
(단,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)
  -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우리 시에 통보(공문)

## □ 지원 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

- ① 업무용 오피스텔 제외, 전세를 통한 임대 제외(월세 없는 임차 보증금만 있는 경우)
-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
-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
- 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
(예 : 기업, 기업대표,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)
-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
- ⑥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

경우는 예외)

-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
- 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
- ⑨ 국세, 지방세 체납 기업
- 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- ⑪ 휴·폐업중인 기업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

### 3. 접수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4. 2. 23.(금) ~ 3. 8.(금) / 15일간

□ 접수방법 :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통한 온라인 접수 (그 외 접수 불가)

※ 주소 : <https://www.losims.go.kr>

※ 보탬e 회원가입, 단체등록,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등 완료 후 공모 신청 必

※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전 절차는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반드시 시스템 매뉴얼 숙지 후 신청 요함

□ 문의처 :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(☎ 031-310-6232), 보탬e

□ 제출서류 : [붙임 1] 첨부

No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「중소 제조기업 노동자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」 신청서 ※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포함	1부	[서식1]
2	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·중복지원금지 약약서	각1부	[서식2] [서식3]
3	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	
4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정규직 여부확인) ※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에서 발급 가능	1부	
5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※ 국세 :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: 정부민원포탈 사이트(www.minwon.go.kr)에서 발급 가능	각1부	
6	중소기업 확인서	1부	
7	임대차 계약서, 기업명의 통장 사본 ※ 통장은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 사용금지	각1부	
8	기숙사 이용근로자 근로계약서,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	각1부	

\*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,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\* 각종 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,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필요

#### 4.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

- 선정방법 : 부서자체심사(1차) 및 시흥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(2차) 후 선정  
※ 심사기준에 의거 최고점 순으로 선정
- 심사기준 : [붙임 2] 첨부
- 결과발표 : 2024년 3월 중 개별 통보

#### 5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허위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비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분 및 임차비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- 신청한 기숙사 노동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 될 시 임차비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- 붙임 1.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제출서식 1부.  
2.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1부. 끝.